

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7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8. 31.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「공직자윤리법시행령」, 「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」 개정으로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,
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시민단체 추가 (안 제2조)
- 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 (안 제3조)
 - 고성군소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
 - 고성군소속5급이하공무원및관할공직유관단체임직원,퇴직공직자
 - 고성군의회의원및의회소속공무원,퇴직공직자
 - 고성군의회소속5급이하공무원,퇴직공직자
- 위원회의 회의 관련사항 변경 (안 제6조)
 - 위원회의 의결사항 :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 -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 -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않음 (신설)
- 위원회 수당 지급 사항 변경 (안 제8조)
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→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고성군위원회

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

- 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추가 (신설, 안제9조)

-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시 전년도의 재산등록, 심사에 관한 보고서 제출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

- 공직자윤리법 제9조, 제20조의2

-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36조

4. 본문

- 불임과 같음

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“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각각하고, 제1항제1호 중 “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.”를 “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, 제1항제2호 중 “소속공무원 1명”을 “고성군 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당해 군의회”를 “군의회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

1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 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
 3.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
 4.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-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.
1. 고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,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한 공직자에 관한 사항
 2. 고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및”을 “과”로 하며,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

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잔임”을 “남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 중 “다음 사항에 관하여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”로 하고, 동조제3항제2호 중 “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”를 “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”로 하고,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”를 “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”로 하고, “수의 계산에 있어서”를 “수 계산에서”로 하고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
 2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
 3.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
 4. 법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, 제28조의 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”를 “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.”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고성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주사로 하고, 사무직원은 고성군 공직윤리담당자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중 "규정한 것 이외"를 "규정한 사항 외"로 하고, "운영에 관하여 필요"를 "운영에 필요"로 하여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9조(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의 재산등록 ·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
2. 전년도의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
3.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: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	제명 :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3인의 위원은 <u>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</u>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2. 2인의 위원은 고성군 의회의원 1명과 <u>소속공무원 1명</u>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당해 군의회의 추천</u>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-----명-----명-----</p> <p>1. --명-----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2. --명----- 고성군 기획감사실장-----</p> <p>②-----</p> <p>1. -----명-----</p> <p>2. -----명-----</p> <p>③ -----</p>
제3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	제3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1.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p> <p>2.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</p> <p>3.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</p> <p>4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</p> <p>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.</p> <p>1. 고성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p> <p>2. 고성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선임하여야 한다.</p>	<p>1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p> <p>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</p> <p>3.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</p> <p>4.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</p> <p>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.</p> <p>1. 고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,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한 공직자에 관한 사항</p> <p>2. 고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p>
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</p> <p>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고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</p>	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</p> <p>① -----과 -----, 한 차례만 -----.</p> <p>② ----- 제1항에도 불구하고 -----</p> <p>③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</u> 기간으로 한다.	----- ----- 남은 -----.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<u>통괄</u> 한다. ② 위원장이 <u>사고가 있을 때</u>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	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<u>총괄</u> -----. ② ----- <u>부득이한 사유로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-----.
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(생략) <u>②</u>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(현행과 같음) <u>②</u>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1.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.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.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.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	1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.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. 법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, 제28조의 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
③ 위원은 <u>다음 사항에</u>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	③-----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1. (생략)</p> <p>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</p> <p>3. (생략)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----- 수 계산에서 -----.</p> <p>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7조(위원회의 간사등)</p> <p>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<u>간사</u>와 <u>사무직원</u>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<u>간사는 고성군 소속공무원중에</u>서 <u>군수가 임명한다.</u>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간사 등)</p> <p>① ----- 위원회에 <u>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.</u></p> <p>② <u>간사는 고성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주사로 하고, 사무직원은 고성군 공직윤리담당자로 한다.</u></p>
<p>제8조(수당등) 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1. 전년도의 재산등록 ·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</u></p> <p><u>2. 전년도의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</u></p>
제9조(위원회의 운영 규정) 이 조 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	제10조(위원회의 운영 규정) ----- -----규정한 사항 외 ----- 운영에 필요 -----. -----.